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7호 2020. 11. 10.(화)

##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0-188호 남해읍(선소)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1
- 남해군 고시 제2020-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3

##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0-1299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남해군 공고 제2020-1303호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9
- 남해군 공고 제2020-1307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23
- 남해군 공고 제2020-1314호 남해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2 및 소로3-5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 25
- 남해군 공고 제2020-131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28
- 남해군 공고 제2020-1323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 남해군 공고 제2020-133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34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188호

남해읍(선소)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2. 사업 목적 : 농산어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등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어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함.
- 3.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일원(북변리, 선소리, 입현리)
-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시설
    - 남해 보물섬광장 및 생태학습관 신축 : 생태학습관 신축, 해안데크, 조경 등
    - 남해 온누리 쉼터 및 역사정원 : 전망대 및 온누리 쉼터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
    - 선소 해맞이마당 및 해안데크로드 조성 : 해맞이 마당, 산책로 등
    - 남해 더 나눔 주차장 : 공영주차장 증축, 옥상층 주민휴식공간 등
  - 지역경관개선
    - 남해읍 선소항~걷고 싶은 길 조성 : 7개 구간 5,300m

5. 총 사 업 비 : 9,360백만원(국비6,552, 지방비2,808)
6. 사 업 기 간 : 2018년 ~ 2021년 (4년간)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화(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189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양천(지방하천)
2. 성 명 : 강치0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4. 점용목적 : 성토 및 형질변경
5. 점용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번지 외 1필지(1249-1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327㎡(국유지 52㎡, 사유지 275㎡)
7. 점용기간 : 2020. 11. 15. ~ 2021. 11. 14.(1년)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1299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대한 심의 요청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1월 1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654, 팩스 055-860-3707, e-mail : subi9399@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lt;신설&gt;</p> <p>2. ~ 4. (생략)</p> <p>② ~ ⑨ (생략)</p>	<p>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u></p> <p>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0 - 1303호

##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0-6호(2020.1.9.)로 최종 고시된 상신 관광휴양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동대만 생태공원의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남해군 문화관광과(☎055-860-3614)
3.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2>참조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상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상신매립지)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100.0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소계	56,090	감)347	55,743	27.1
	체육시설	33,724	증)1,928	35,652	17.3
	소공원	2,023	감)2,023	-	-
	승마장	10,567	증)1,195	11,762	5.7
	주차장	2,780	증)287	3,067	1.5
	조경·완충녹지	6,996	감)1,734	5,262	2.6
관광휴양 시설용지	관광휴양소계	27,590	감)19,235	8,355	4.1
	진입및상징광장	8,030	감)8,030	-	-
	특산물판매장	2,850	감)2,850	-	-
	먹거리장터	3,590	감)3,590	-	-
	휴게음식점	3,000	감)3,000	-	-
	주차장	850	감)850	-	-
	자동차야영장	3,080	감)3,080	-	-
	관리도로	1,980	감)1,980	-	-
	간이역	4,210	-	4,210	2.1
	보물섬레일파크	-	증)3,100	3,100	1.5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	증)1,045	1,045	0.5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소계	11,900	증)2,240	14,140	6.9
	주차장	7,410	감)291	7,119	3.5
	도로	4,490	증)2,531	7,021	3.4
녹지용지	녹지소계	109,820	증)17,243	127,162	61.9
	녹지(유수지)	91,710	감)2,031	89,679	43.7
	조경·완충녹지	18,110	감)7,443	10,667	5.2
	공원	-	증)26,816	26,816	13.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4	상신리 1-3 답	상죽리 10-9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6	중로3-1	상신리 1-1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	중로3-1	상신리 1-7	일반 도로	-		단지내 도로
신설	소로	3	51	6.5	국지 도로	1,897	상신리 353	오용리 1243-4	일반 도로	-		구역내 L=420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호선	-	○ 폐지(B=8m, L=246m)	○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신설(B=8m, L=36m)	○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신설
-	소로3-51호선	○ 신설(B=6.5, L=1,897m)	○ 농어촌도로(창선207호선) 개설에 따른 노선신설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1	주차장	창선면 상죽리 10-9답 일원	2,780	증)287	3,067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폐지	2	-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1답 일원	850	감)850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	3	2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0-27답 일원	5,230	-	5,23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	4	3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7답 일원	2,180	감)291	1,889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1	○ 면적감소(증287㎡) - 2,780㎡ → 3,067㎡	○ 승마장 부지변경에 따른 주차장 면적증가
-	주차장2	○ 폐지(A=850㎡)	○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주차장2	○ 시설번호 변경(3 → 2)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번호 변경
3	주차장3	○ 면적감소(감291㎡) - 2,180㎡ → 1,889㎡ ○ 시설번호 변경(4 → 3)	○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면적감소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동대만 생태공원	문화 공원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	증)26,816	26,81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동대만 생태공원	○ 신설 (A=26,816㎡)	○ 생태를 주제로 한 자연체험, 생태탐방, 생태관광 및 생태 학습기회 등을 제공하는 복합테마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205,400	-	205,400	
-	I	56,090	감)347	55,743	I-1	I-1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33,724	증)1,928	35,652	체육시설
					I-2	-	창선면 상죽리 10-8번지 일원	2,023	감)2,023	-	
					I-3	I-2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10,567	증)1,195	11,762	체육시설
					I-4	I-3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2,780	증)287	3,067	체육시설
					I-5	I-4	창선면 상죽리 10-15번지 일원	6,996	감)1,734	5,262	체육시설
-	II	27,590	감)19,235	8,355	II-1	-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8,030	감)8,030	-	
					II-2	-	창선면 상신리 1-8번지 일원	2,850	감)2,850	-	
					II-3	-	창선면 상신리 1-5번지 일원	3,590	감)3,590	-	
					II-4	-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00	감)3,000	-	
					II-5	-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850	감)850	-	
					II-6	-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80	감)3,080	-	
					II-7	-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1,980	감)1,980	-	
					II-8	II-1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	4,210	-	4,210	관광 휴양시설
					-	II-2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	증)3,100	3,100	관광 휴양시설
					-	II-3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	증)1,045	1,045	관광 휴양시설
-	III	11,900	증)2,240	14,140	III-2	III-1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4,490	-	4,490	공공시설
					III-3	III-2	창선면 상신리 10-27번지 일원	5,230	-	5,230	공공시설
					III-4	III-3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2,180	감)291	1,889	공공시설
						III-4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	증)297	297	공공시설
					-	III-5	창선면 상죽리 10-1번지 일원	-	증)2,234	2,234	공공시설
-	IV	109,820	증)17,342	127,162	IV-1	IV-1	창선면 상죽리 10-2번지 일원	91,710	감)2,031	89,679	녹지
					IV-2	-	창선면 상신리 347-1번지 일원	6,890	감)6,890	-	
					IV-3	IV-2	창선면 상신리 5-4번지 일원	5,220	증)347	5,567	녹지
					IV-4	IV-3	창선면 상죽리 10-27번지 일원	6,000	감)900	5,100	녹지
					-	IV-4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	증)26,816	26,816	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기정	변경	용도	지정용도	기정	변경
	I-2	용도	지정용도	소공원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40%이하	-		
		용 적 률	100%이하	-		
		높 이	2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 축 선	-	-		
	I-3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승마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용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I	II-1	-	용도	지정용도	진입 및 상징광장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륜	12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 축 선	-	-			
	II-2	-	용도	지정용도	특산물판매장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륜	12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 축 선	-	-			
	II-3	-	용도	지정용도	먹거리 장터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륜	12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 축 선	-	-			
	II-4	-	용도	지정용도	휴게음식점(관광식당)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륜	12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 축 선	-	-				
II-6	-	용도	지정용도	자동차야영장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60%이하	-		
		용 적 륜	120%이하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건 축 선	-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II	II-8	II-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II-2	용도	지정용도	보물섬레일파크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II-3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I	-	III-1 III-4 III-5	용도	지정용도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III-2 III-3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남 해 군 공 보

(16) 제 677 호

2020년 11월 10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IV	-	IV-1	용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IV-2	용 적 륜	-
				IV-3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IV-4	용도	지정용도	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용 적 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높 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4.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26,816	100.0	
도로 및 광장	6,216	23.2	
조경시설	399	1.5	
휴양시설	1,888	7.0	
유희시설	966	3.6	
교양시설	1,011	3.8	
편익시설	943	3.5	
공원관리시설	75	0.3	
녹지 및 기타	15,318	57.1	조경·완충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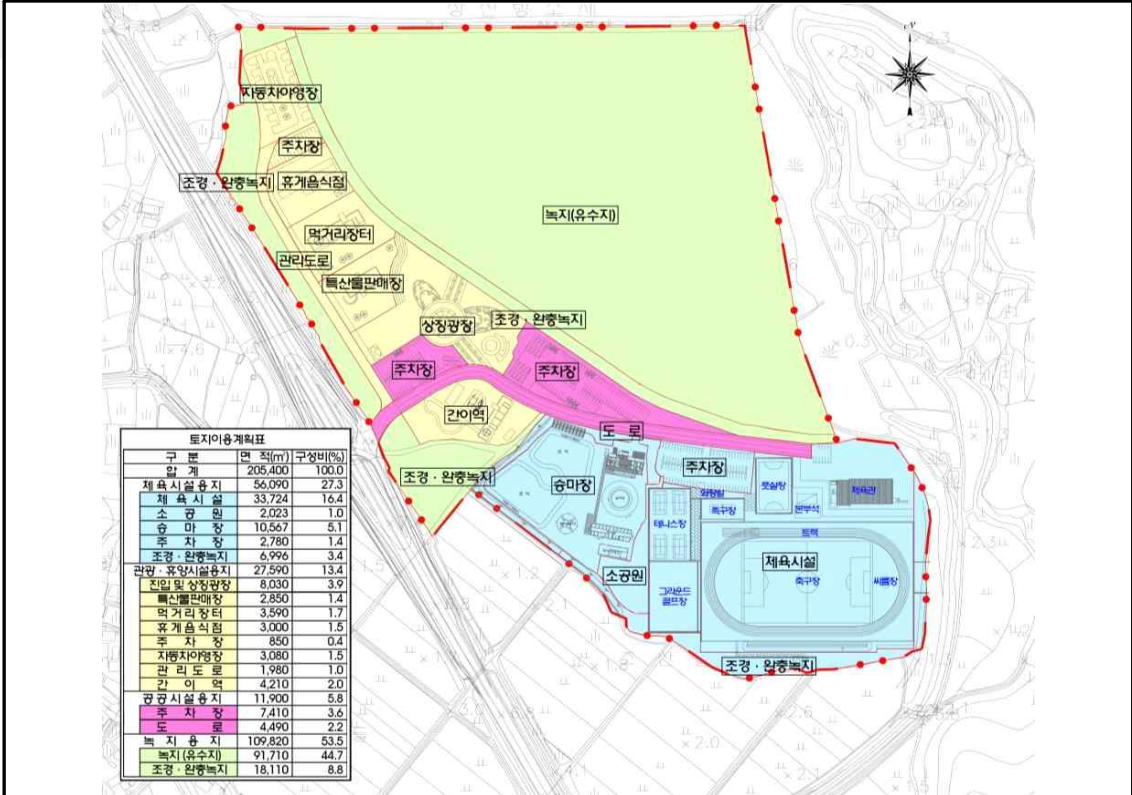
▣ 시설별 조서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비고
총계			26,816		
시설면적			11,498		
도로/광장	소계		6,216		
	도로		4,160		
	광장	가-1	453		
		가-2	473		
		가-3	426		
		가-4	425		
		가-5	279		
조경시설	소계		399		
	습지탐방로	나-1	216		
		나-2	183		
	꽃잎트렐리스	①		1	
	꽃잎조형물	②		6	
	보행교	③		1	
	데크탐방로	④		1	
휴양시설	소계		1,888		
	잔디광장	다-1	1,260		
	휴게쉼터	다-2	339		
	데크쉼터	다-3	289		
	피콜라	⑤		7	
	막구조피콜라	⑥		7	
	휴게트렐리스	⑦		1	
유희시설	소계		966		
	테마놀이터	라	966		
	그물놀이대	⑧		1	
교양시설	소계		1,011		
	테마정원	마-1	563		
		마-2	290		
		마-3	158		
편익시설	소계		943		
	지역특산물장터	바-1	750		
	먹거리쉼터	바-2	193		
공원관리시설	소계		75		
	관리사무소	사-1	60		매표소 포함
		사-2	15		
녹지/기타	소계		15,318		
	녹지		15,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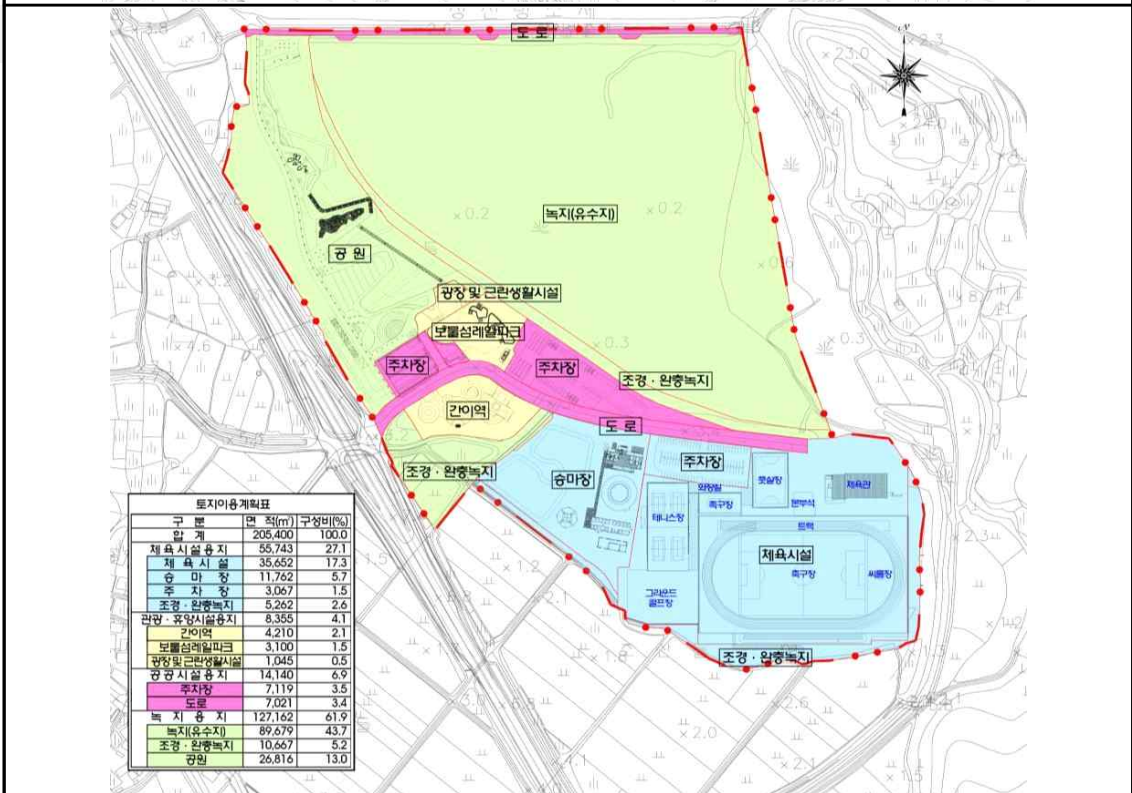
## <붙임2>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도면

### 1. 토지이용계획 결정(안)도(참고용)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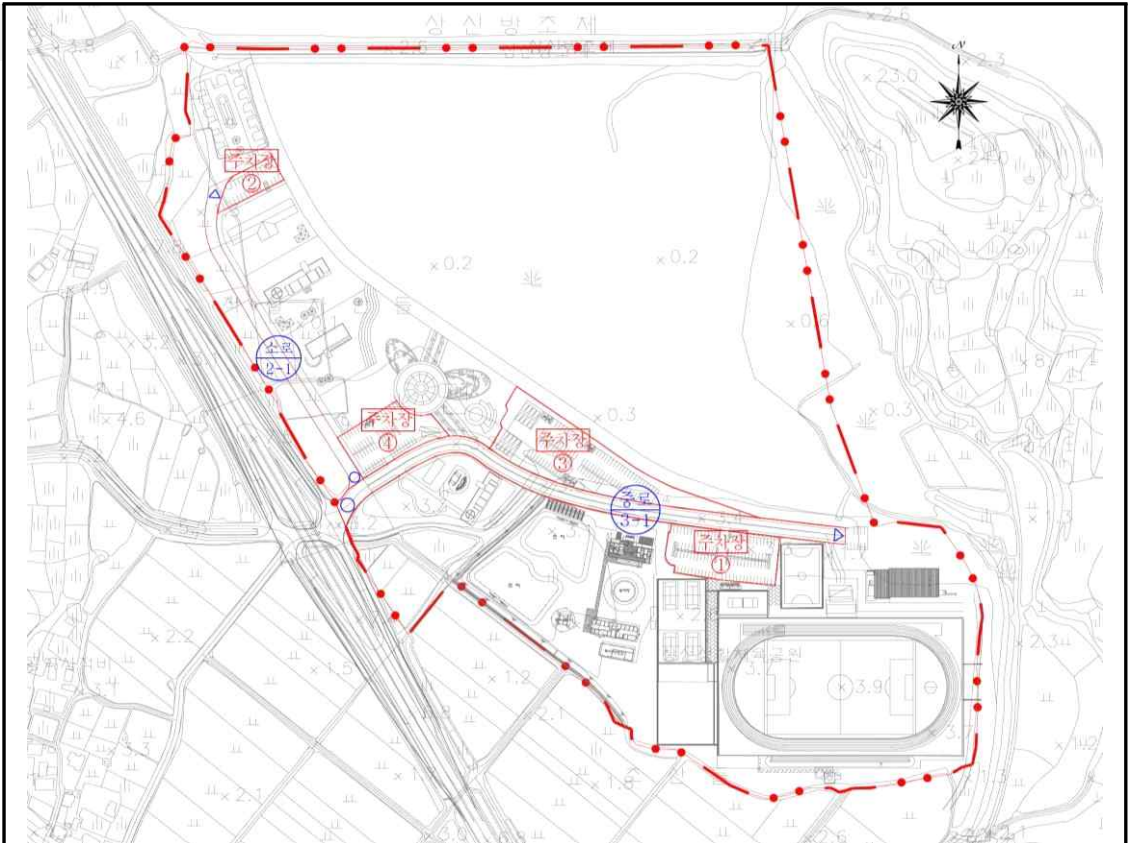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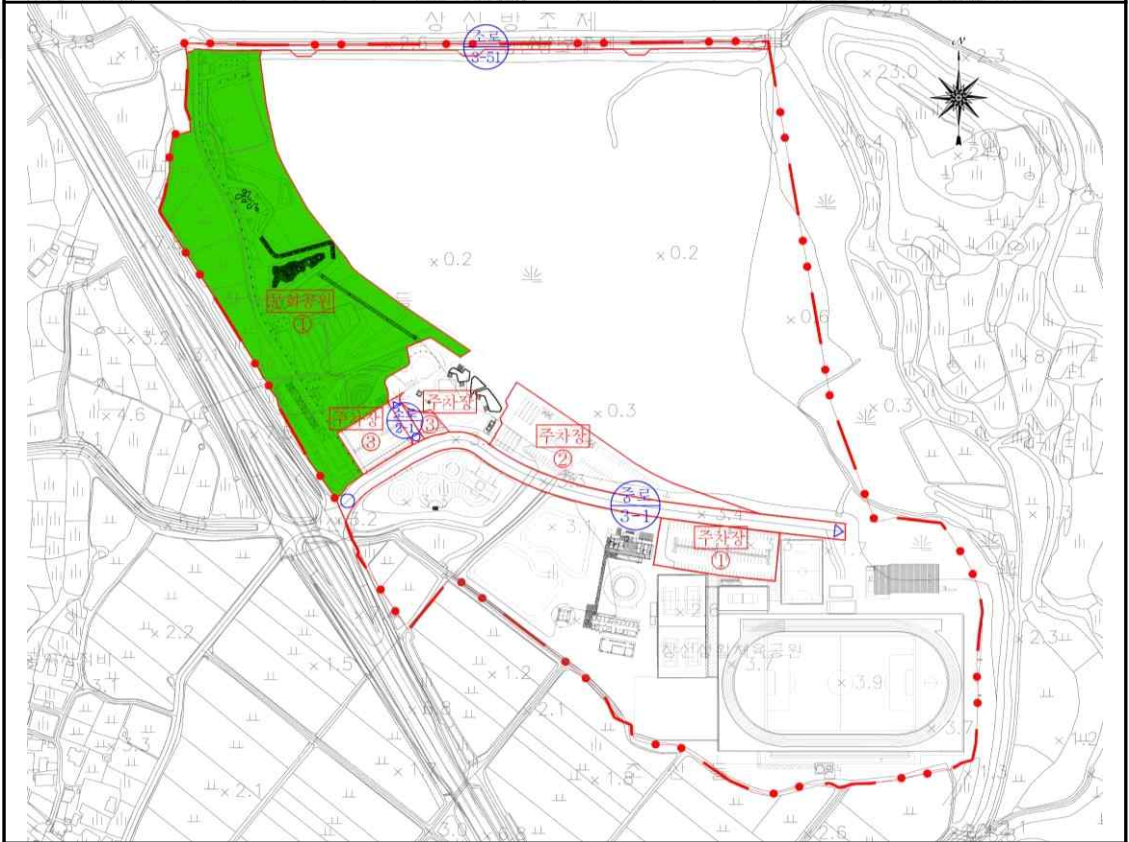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도(참고용)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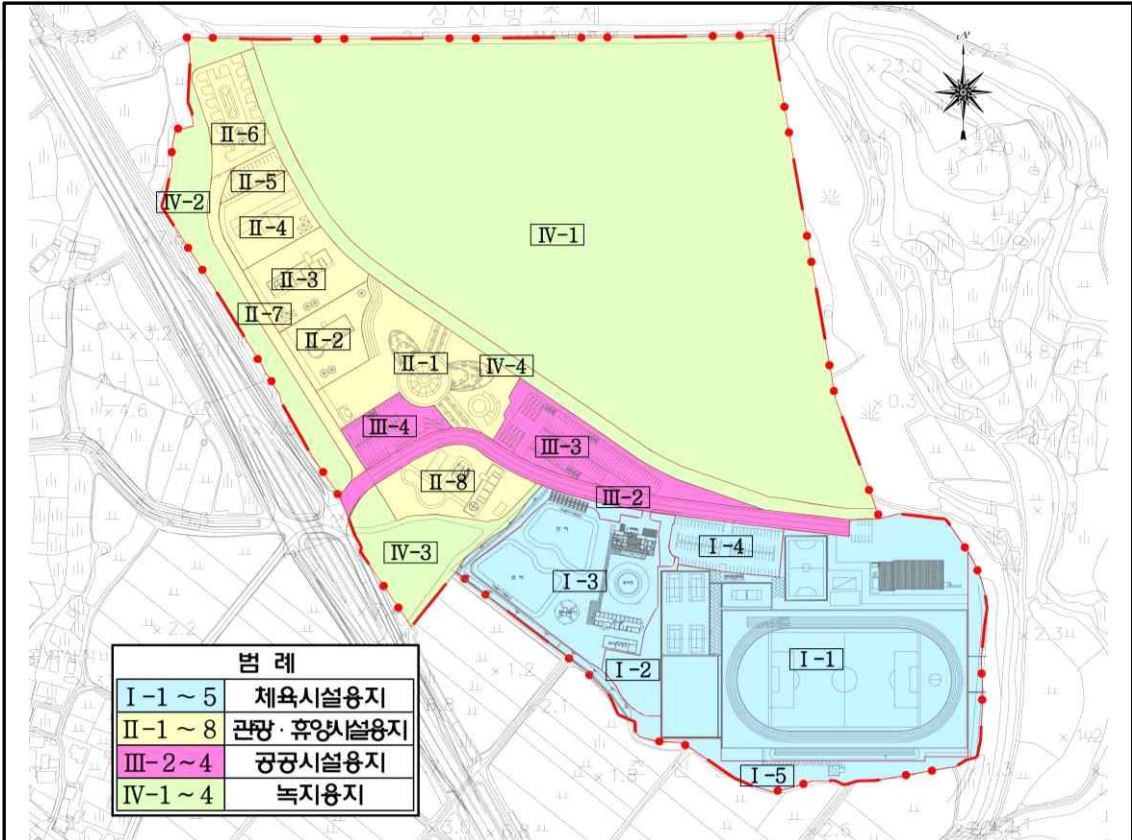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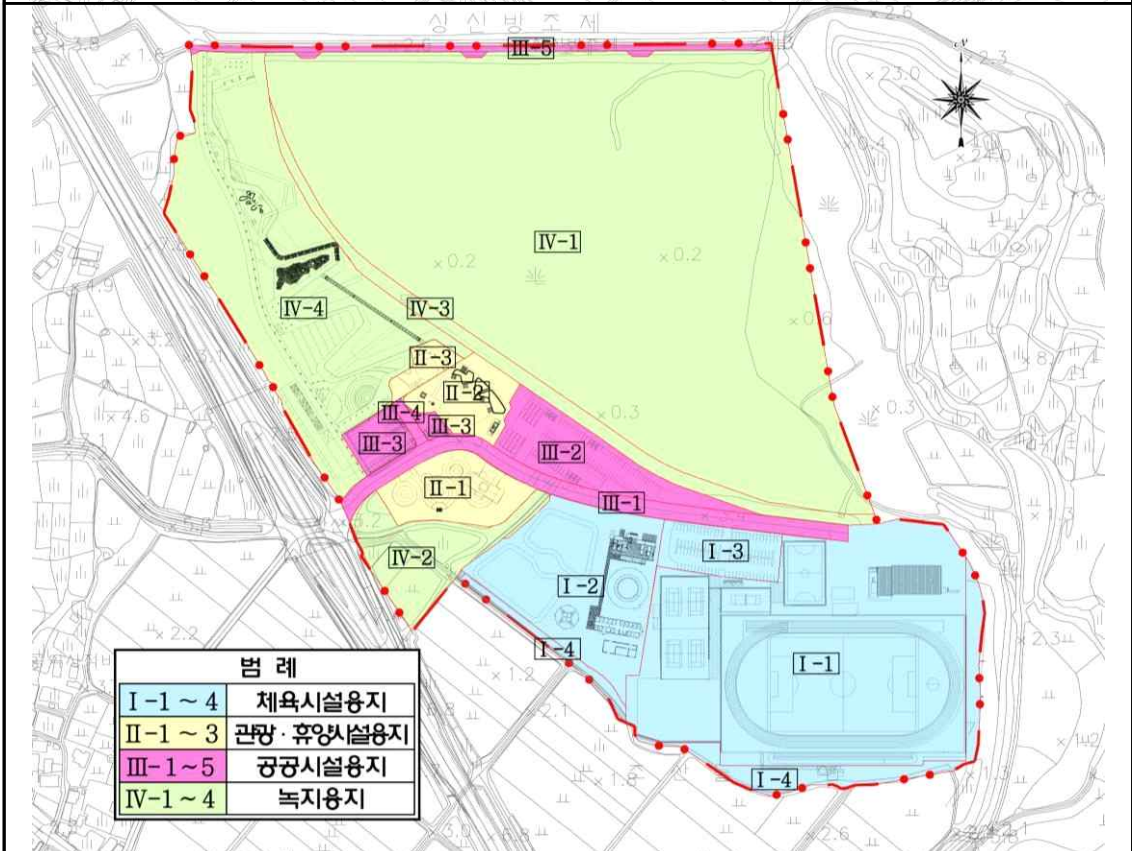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도(참고용)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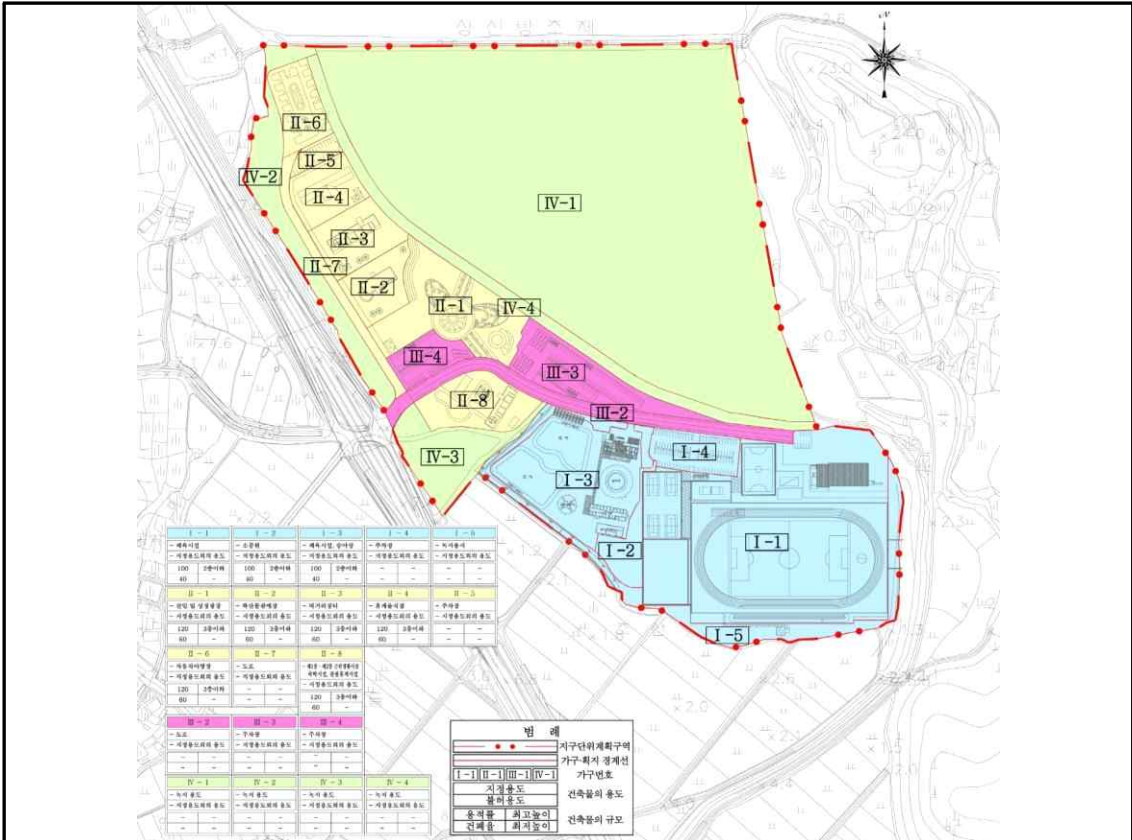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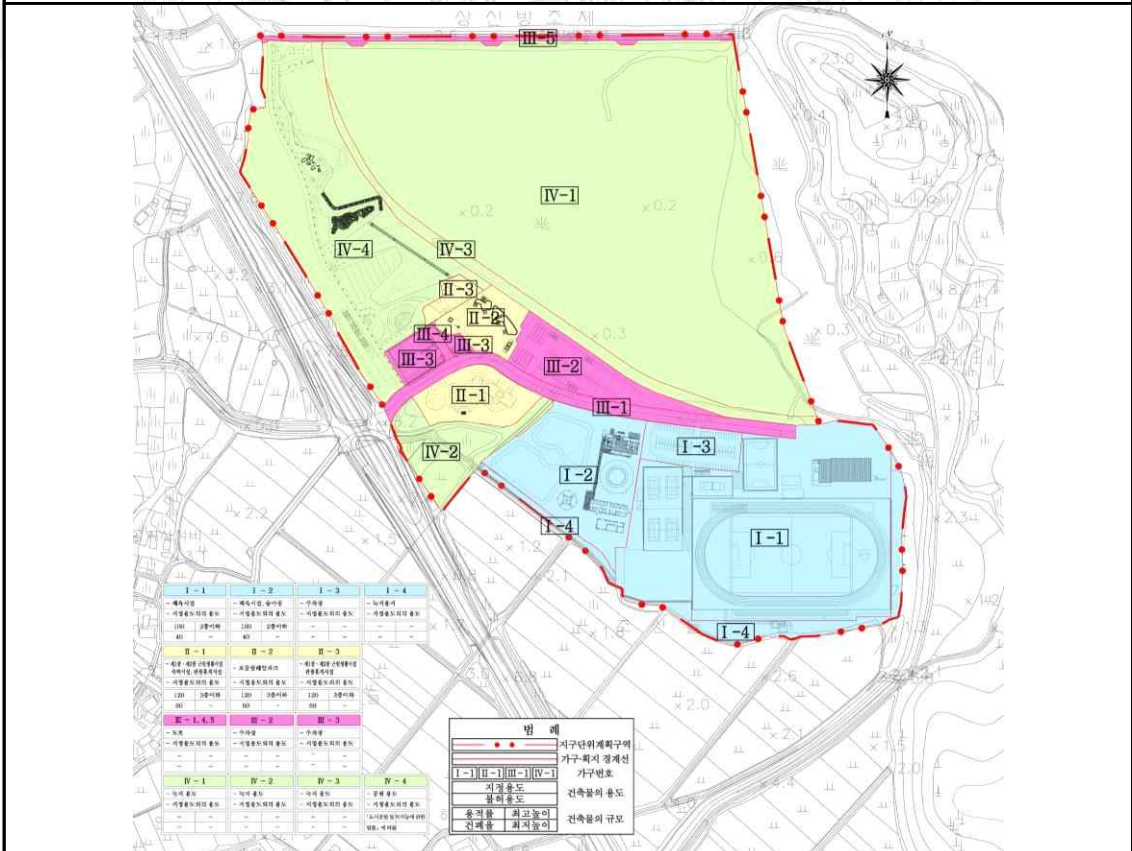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안)도(참고용)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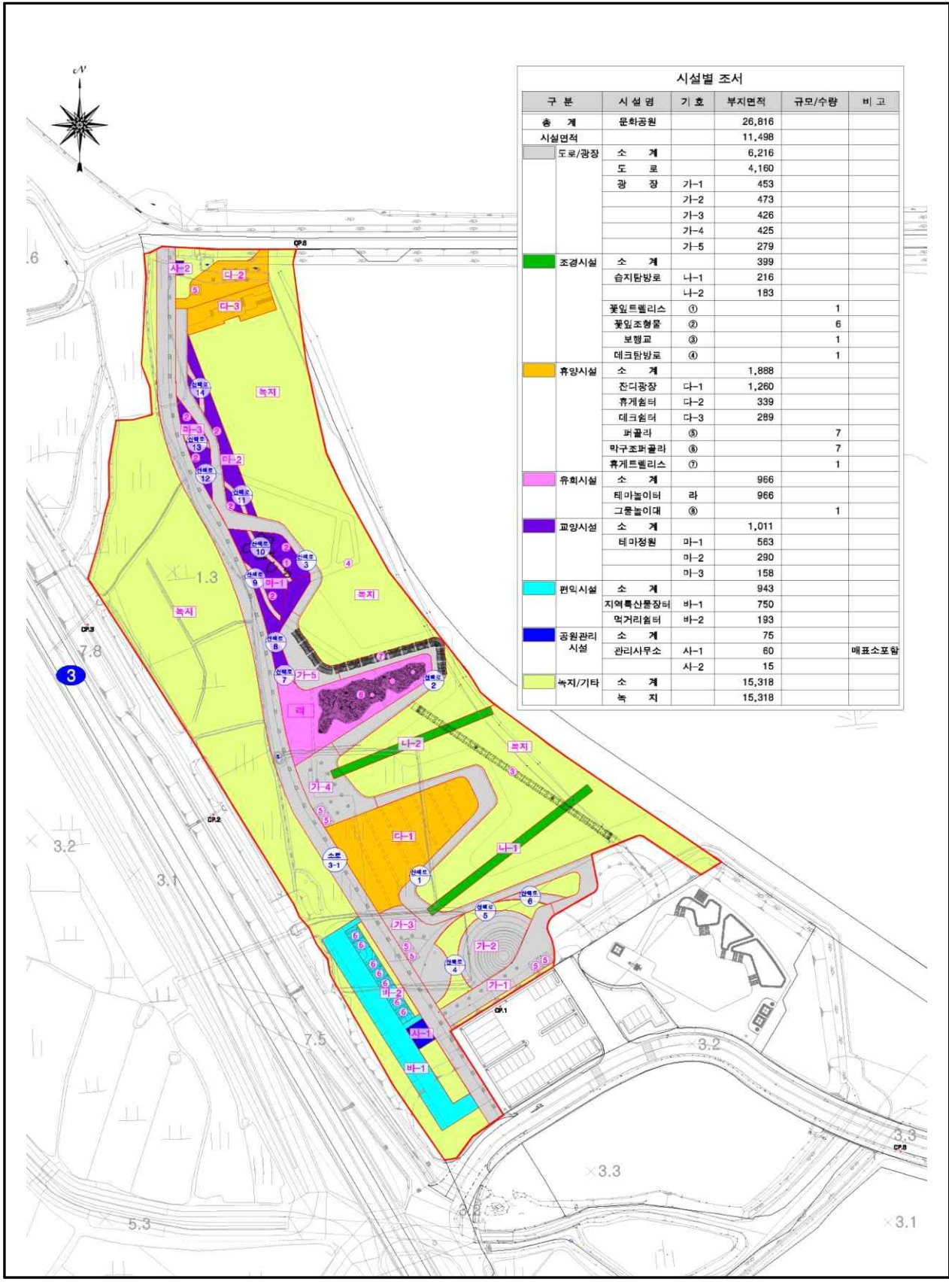


변경 ▶





5. 공원조성계획(안)도(참고용)



남해군 공고 제2020 - 1307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568호	복합양식 (수하식)	미역류, 툫, 다시마류	남면 홍현	10,000	2020.10.31. 2030.10.30. (10년)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어촌계	제168호 재개발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168호	복합양식 (수하식)	미역류, 툫, 다시마류	남면 홍현	10,000	2020.10.31. 2030.10.30. (10년)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어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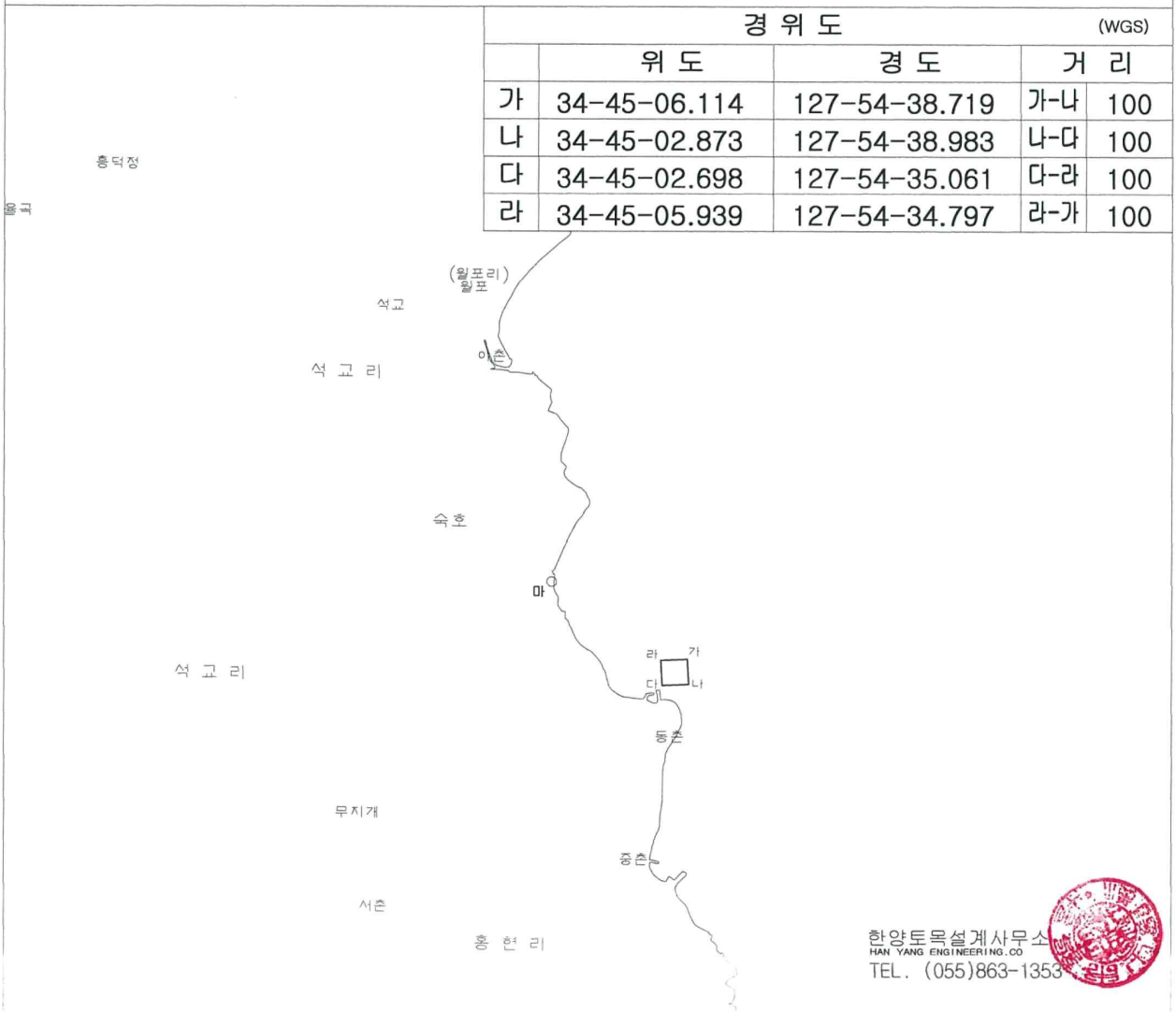


### 남해양식 제 568 호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복합 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34-45-16.008, E127-54-17.980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1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0 - 1314호

## 남해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2 및 소로3-5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0-109호(2020.6.23.)로 결정 고시 된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소로3-56호선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055-860-3413) 및 보건소 공공의약팀(☎055-860-8749)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도로)
  - 명칭 : 사회복지시설2 및 소로3-5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사회복지시설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6,537	100.0	
노유자시설	1,370	21.0	
창 고	243	3.7	
보 도	436	6.7	
휴게공간	393	6.0	
도로 및 주차장	1,656	25.3	
녹 지	2,439	37.3	

■ 도로

구 분	연 장 (m)	폭 (m)	비 고
도로명 소로3-56호	263	6.0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6) 및 보건소(055-860-8749)에 비치】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사회복지시설2)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7,193	6,537					
1	아산리	150	대	5,600	4,951	남해군				
2	아산리	150-1	대	993	991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3	아산리	150-5	답	60	55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4	아산리	155-1	대	480	480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5	아산리	155-12	창	60	60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 토지조서(소로3-56호)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0,885	1,588					
1	아산리	150-4	도	767	661	남해군				
2	아산리	150-1	대	993	2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3	아산리	150-5	답	60	5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4	아산리	157	대	2,935	475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0			
5	아산리	158-3	도	1,562	340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6	아산리	170	대	3,491	6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0			
7	아산리	170-1	대	92	92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0			
8	아산리	170-2	대	40	6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남해군지부)	근저당
9	아산리	172-2	도	945	1	윤O선	북변동 559-1			

남해군 공고 제2020 - 1317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소하천명	율도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910번지 일원		
	면적	61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1. 2.~ 영구(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목적 및 사유	창선 보물섬 대안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		

남해군 공고 제2020 - 1323호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체의 절차와 방법을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12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전화 055-860-3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의 견 제 출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지정” 을 “지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
- 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 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li> <li>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li> <li>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li> </ol>

남해군 공고 제2020 - 1336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장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0번길 13
	소하천명	정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02번지		
	면적	7.771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1. 5. ~ 영구		
	목적 및 사유	이동면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송전관로 매설		